법인세법상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연구

임성종*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핵심주제어: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 과세이연, 염가매수차익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07일 수정일: 2016년 06월 09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15일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sniper700@cau.ac.kr

Ⅰ. 서 론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를 피합병법인이라고 하며, 합병 후 존속(흡수합병의 경우)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신설합병의 경우)를 합병회사라고 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 등을 받게 된다. 즉,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에게 순자산을 양도하고 그 법적 실체가 소멸하며, 양도로 인하여 양도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또는 고가)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또는 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순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게 된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기존 주식(또는 출자금)을 반납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 때문에 의제배당소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러 세제를 개편해 왔으며, 2010년에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합병(분할)차익, 합병(분할)평가차익 등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양도차익의 개념으로 간소화시켰다. 그리고 종전 적격합병의 요건 중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신주가 합병대가의 95%에서 8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세제로 다가가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으로서 합병이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이전차익,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경우 자산의 이전가액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보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게 된다. 즉 합병을 통하여 회사 경영 및 지분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합병 전과 합병 후의 경영주체 및 실질의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미실현손익이 계속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세법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즉, 회사형태의 조정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주는 근본적인 시각은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회사 외형에만 변화가 있을 뿐 지배구조나 소유관계 등이 동일할 하다는 가정하에 기업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과세이연제도를 합병세제에 도입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시 과다한 세금문제로 인하여 합병절차를 포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차손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도 의제배당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므로 세제상 구조조정에 대한 원활한 방식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적격합병인 경우에도 자산조정계정의 계상을 통해 과세의 시기만을 이연할 뿐, 합병법인에게 과세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한편, 2010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또한 자산조정계정의 세무상 설정 및 사후관리는 법인세 조문의 분량도 많고 이해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실체적인 세금효과를 연구해야 할 입법자, 학자, 실무자들은 이 조문들을 해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체계를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합병의 주체에 따라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검토한 후 자산조정계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 Ⅲ장에서는 자산조정계정 및 기타 합병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 Ⅳ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합병의 과세체계

1.1 개요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 등을 받게 된다. 즉,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에게 순자산을 양도하고 그 법적 실체가 소멸하며, 양도로 인하여 양도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또는 고가)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또는 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순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게 된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기존 주식(또는 출자금)을 반납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 때문에 의제배당소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이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는 피합병법인에게 과세되지 않은 누적된 미실현이익을 합병으로 인하여 실현되었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합병을 단순히 모든 순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를 하게 되면 기업은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지나지 않는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조세에 관한 이연규정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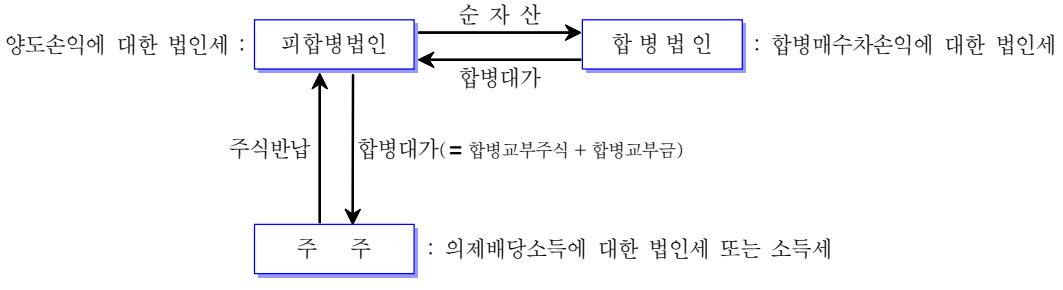

<그림 1> 합병의 과세체계

1.2 적격합병의 요건

법인세법 44조 2항과 법인세법시행령 80의 2조에 의한 적격합병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말한다.[1)]

1) 법인세법 44조 2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

1.2.1 사업목적의 합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사업목적의 합병으로 본다.

1.2.2 지분의 연속성

80% 이상을 판단하는 주식교부비율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액/합병대가의 총합계액'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에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합병교부주식가액(합병포합주식에 대한 합병교부주식 간주액을 포함함)과 합병교부금(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병교부금(금전으로 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연속성에 부득이한 사유[2]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의 연속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2.3 사업의 계속성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 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 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1항 1호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 2에 따라 주식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표 1> 적격합병의 요건

구 분	내 용
(1) 사업목적의 합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2) 지분의 연속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①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80% 이상(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가액이 80% 이상일 것 ②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할 때 일정한 지배주주 등에게 '합병교부주식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할 것 ③ 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배정받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사업의 계속성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 합병법인의 세무문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보되 양도받은 자산의 가액을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시가로, 적격합병 등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비적격합병에 대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등

2.1.1 비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때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양도가액을 지급하게 되는바 다음의 산식과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시가'라 한다)에 적거나 초과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는바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합병매수차손익(미달액 또는 초과액) =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3]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의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계상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균등하게 나누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

3) 이때 순자산 시가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에 반해, 초과액(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계상하고 위의 합병매수차익의 방법을 준용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2.1.2 세무조정사항의 미승계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은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제4항 및 제34조 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유보)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한다.

2.2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

2.2.1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법인은 적격합병의 경우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합병법인은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2.2 자산조정계정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사후관리

자산조정계상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4)]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4) 자산조정계정은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한다(기업회계상 취득법 회계처리의 경우)
1.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
기업회계상의 자산이 세무상의 자산보다 자산조정계정만큼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손금산입(△유보) 로 세무조정한다. 그리고 순자산이 증가한 만큼을 익금산입 기타으로 세무조정한다. 즉 동액만큼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로 처리하였다가 그 자산을 상각 또는 양도할 때 익금산입(유보)으로 반대조정한다.
2.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작은 경우

것만 해당한다)와 상계하고(익금산입한다는 의미이다)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손금산입한다는 의미이다)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반해,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2.2.3 세무조정사항,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등)외에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세무조정사항)의 승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표 2>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구 분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적격합병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이 승계함
위 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음

한편,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법상 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법상 결손금을 승계한다. 이처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에만 공제되므로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하더라도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란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세법상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함)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업회계상의 자산이 세무상의 자산보다 자산조정계정만큼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다. 그리고 순자산이 감소한 만큼을 손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한다. 따라서 동액만큼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기타)하였다가 그 자산을 상각 또는 양도할 때 손금산입(△유보)으로 반대조정한다. 그러나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이 아니므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은 세무조정 없이 소멸시킨다.

<표 3>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구 분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등기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미공제잔액)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합병등기일 해당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전에 승계하여 공제한 결손금

3. 합병과세의 선행연구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의 극복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부담의 경감제도가 도입된 이후 합병·분할 등에 대한 법적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었다(옥무석외 2003).

한만수(2000)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어떤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와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가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제도와 중점 비교하여 조세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실무상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경제적 분석도 이루어졌으며, 이병기(2006)는 외기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의 합병전후 기간의 기업의 경제적 성과변화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에 이루어진 합병의 경우 합병전보다 합병 후에 생산성, 수익성, 성장성 등이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엽(2014)은 합병법인의 과세문제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정의하고, 그 최종적인 세금효과를 놓고 보면 직접법과 간접법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 구조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회계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인 세무조정의 방식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과 미실현이익을 명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을 하였다. 결국 복잡한 법조문 체계를 단순히 하기 위하여, 우리 법도 간접법을 버리고 미국법이나 일본법과 같은 직접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단순히 소멸회사의 장부가액을 넘기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을 합병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기업구조조정에서도 모두 단순한 직접법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Ⅲ. 자산조정계정 및 기타 합병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산조정계정

1.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010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적격합병 시 자산조정계정을 세무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 4 조문인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르면,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 3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때,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은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상기 이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데,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이는 결국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여 합병법인이 이를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 4 조문은 대단히 복잡하고 의미 파악이 쉽지 않아 법안자들만이 아니라 실무자들에게도 혼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를 쉽게 표현하자면 소멸회사의 장부가액을 존속회사로 넘긴다는 매우 간단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복잡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우회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1.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합병법인의 현행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한 이유를 자산조정계정에서 찾을 수 있다. 자산조정계정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통하여 유보로 설정하는 이유는 세무상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합병법인인 P사는 피합병법인 S사(순자산의 시가는 300, 장부가는 100)를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신주(시가 270, 액면가 50)을 발행하였다. 이에 합병법인은 기업회계에서 규정한대로 S사의 순자산을 시가로 인식하여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차) 제자산	700	(대) 제부채	400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	220
		염가매수차익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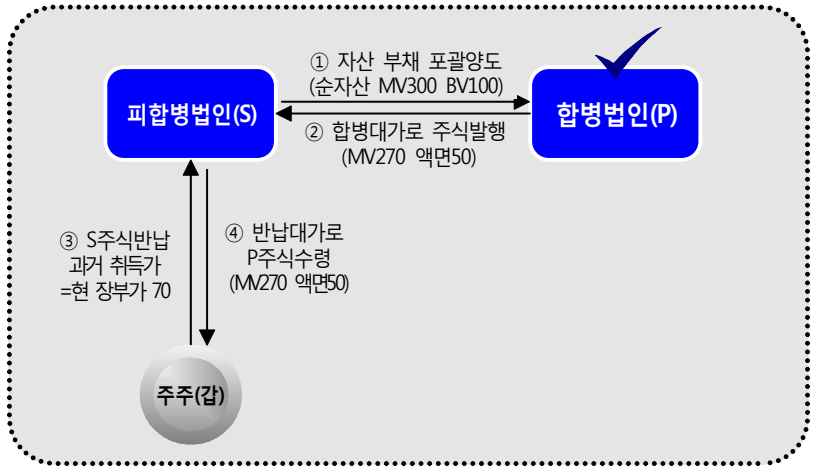

<그림 2> 사례에 따른 과세문제

하지만 위의 기업회계상 처리와 달리 법인세법상은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이때 세무상으로도 기업회계의 처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시가로 계상할 수 있다면 비적격합병의 세무처리와 마찬가지로 염가매수차익을 세법상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말에 이를 손금산입과 유보로 일시적으로 조정을 한 후 세무상 이를 계속 관리 및 유지하면서 향후에 관련 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 시 반대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당초에 이연된 과세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것이 실무상 더욱 간단하고 세무조정의 간결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표 4>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의 개선방안

구 분	세무상 장부가액 승계시	세무상 시가 승계시
기업회계	(차) 제자산 700 (대) 제부채 400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 220 염가매수차익 30	(차) 제자산 700 (대) 제부채 400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 220 염가매수차익 30
법인세법	(차) 제자산 400 (대) 제부채 300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 50	(차) 제자산 700 (대) 제부채 400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 220 염가매수차익 30
세무조정	<손금산입>자산조정계정 200(△유보) <익금산입>주식발행초과금 170(기타)	세무조정 없음[5]

2. 포합주식의 존재

2.1 현행 제도의 문제점

과세이연요건인 지분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 합병대가 중 주식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80% 이상 배정 여부를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즉,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5) 이때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합병시 세무상 바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비적격합병 과세방안과 같이 손금산입(유보)로 조정 후 향후에 익금산입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등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첫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 주식 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 등(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의 가액으로 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 등(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의 가액으로 한다.

이때,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인지 여부는 시가로 계산하여 판단한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하나의 사례로 접근하면 다음과 같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3억원(지분율 30%)이 있는 상태에서 합병 시 외부주주(지분율 70%)에게 주식 7억원을 준 경우 주식배정 비율을 산정한다고 가정한다. 단,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표 5> 주식교부비율의 산정

구 분	내 용
합병법인이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주식교부비율 = (합병대가 + 교부간주액 — 2년이내 포합주식[6]) / (합병대가 + 교부간주액) = (7억원 + 3억원 — 1억원) / (7억원 + 3억원) = 90%(요건충족)
합병법인이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교부비율 = (합병대가 + 교부간주액 — 2년이내 포합주식[7]) / (합병대가 + 교부간주액) = (7억원 + 3억원 — 3억원) / (7억원 + 3억원) = 70%(요건미충족)

하지만 이렇게 합병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경우 그 실질을 고려하여 합병교부금으로 본다는 취지는 이미 김해마중(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2년 이내에 취득한 모든 주식을 합병 직전 합병계획과 무관하게 취득한 포합주식과 동일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즉 이러한 주식은 합병 시 이미 보유한 주식으로 합병으로 회사에 대한 소유관계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합병을 의도하지 않고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6) 이때, 금전지급액으로 보는 금액은 20%를 초과하는 10%지분에 대한 합병포합주식 가액 1억원이다.
7) 이때, 금전지급액으로 보는 금액은 30% 지분에 대한 합병포합주식 가액 3억원이다.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이 될 수 없어 결국 합병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8)]

2.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실무상의 합병 관행을 살펴보면, 많은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의 어느 정도 미리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합병의 경우에는 포합주식이 관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상당액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2년 내 취득한 포합주식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금전으로 교부받은 합병대가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소각하는 경우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대가로 간주되므로 합병대가와 취득가액은 일치하게 된다(정지선 등, 2011). 그러나 소각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포합주식을 법인세법에서 합병대가에서 제외하거나 즉시 소각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과세이연의 사후관리

3.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사업계속성 중단) 또는 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지분연속성 중단)에는 과세이연을 중단한다.

위와 같은 과세이연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별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 합계액(총 합계액이 유보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함)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중단한다. 이 경우 계상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한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의 계속성과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한다.

다시 말하자면, 합병매수차익(또는 합병매수차손 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이연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또는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익금(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합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요건을 위배하는 사건

8) 포합주식의 경우 합병법인은 해당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 신주를 배정하고, 이를 합병 후 매각 또는 감자하거나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소각하든지 소각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합주식에 대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곧 합병대가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자기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2011, 세무학연구, 정지선 외 공동연구).

이 일어난 사업연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잠재적인 귀속시기 위배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3.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현재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사후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과세이연이 취소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항에 불과하게 된다. 그 이유는 적격 요건의 유지기간이 2년에 불과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주식 보유 요건이나 사업의 계속성 요건 등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사후관리 규정[9]과 유사한 기간인 5년으로 사후관리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시, 요건을 위배한 사건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정을 하는 현재의 방식도 문제가 있으므로 합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법인세를 경정하여 당초의 합병과세를 문제를 올바르게 바로 잡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요약 및 결론

합병법인은 적격합병의 경우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합병법인은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0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또한 자산조정계정의 계상 및 사후관리는 법인세 조문의 분량도 많고 이해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실체적인 세금효과를 연구해야 할 입법자, 학자, 실무자들은 이 조문들을 해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병법인의 현행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한 이유를 자산조정계정에서 찾을 수 있다. 자산조정계정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통하여 유보로 설정하는 이유는 세무상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실무상의 합병 관

9) 법인세법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은 준비금 계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의하여 경정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즉시 환급하는 등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은 대부분 5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5년의 기간이 사후관리 요건 등을 따질 때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유예기간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행을 살펴보면 많은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의 어느 정도 미리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상당액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2년 내 취득한 포합주식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금전으로 교부받은 합병대가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우리나라 재계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경제상황에 따라 하나의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중대한 결정일 수 밖에 없으므로 현재까지 부각된 합병상의 여러 문제점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개정하여 정책입안자와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실행하기 쉬운 합병 과세체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성균(2010), “개정 법인세법의 합병 세제 관련 검토”,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pp.445-477.
2. 김완석(2008), 법인세법론, (주)광교이택스.
3. 김용갑(2007), “기업합병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경영정보연구*, 제23권 제4호, pp. 41-74.
4. 김종봉・윤태화(2012),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pp.173-196.
5. 박상봉・김명희(2007),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경영정보연구*, 제23권, pp. 157-174.
6. 박정우・정래용(2011), *M&A와 자본거래의 세무*, ㈜영화조세통람.
7. 손혁・박성진・이효익(2011), “개정된 합병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36집, pp.195-224.
8. 옥무석・최성근・윤현석(2003), *현행 회사 합병・분할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집문당.
9. 이태로・한만수(2010), *조세법강의*, 박영사.
10. 임상엽(2013), “기업인수세제의 논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중립성의 추구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11. 정지선・최천규・권오현(2011),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pp. 203-238.
12. 조경식・김창기・정헌용(2010), “한국자본시장에서 모자회사 합병“, *경영정보연구*, 제29권 제3호, pp. 51-69.
13. 홍성대(2010), *자본이익과 조세*, 세경사.
14. 황남석・이준규(2010),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 *조세법연구*, 제16권 제3호, pp.55-87.
15.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16.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17.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18.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http://www.samili.com)
19. 영화조세통람 홈페이지(http://www.taxnet.co.kr)
20. Block, Cheryl D.(2010), *Corporate Taxation*, 4th ed., Aspen Publishers.

Abstract

A Study on Qualified Merger and Asset Adjustment Account on Corporate Income Tax Law

Lim, Sung-J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our system and consider how the tax rule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asset adjustment account can be improved.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the Korean tax rules on corporate reorganizations, as well as key tax benefits provided by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In case of Korea,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system of taxation respecting the merger has been made the rapid progress in several respects in this situation, there are capable of improvement. This paper suggests improve some problems on tax avoidance abusing incomplete tax law.

First, the asset adjustment account is the difficulty that it needs to follow-up during this period of time, as well as the complexity of the accounting and tax adjustments on the practice. If it is permitted to succeed asset-liability as market value, the complexity of asset adjustment account in corporate tax accounting also disappear.

Second, in cas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possess more than 20% of merged entity, they could not get the tax deferral until after the time of two years has elapsed. It needs to further alleviate the merged entity ratio than the present level.

Finally, after the merger it will be to strengthen the surveillance provisions of five years from the current two years. In addition, continuity of shareholder's requirements and business require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of the follow-up provided by a separate regulation.

Key Words: qualified merger, asset adjustment account, tax deferral, gain/loss from qualified merger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sniper700@cau.ac.kr